

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 - 1420호

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

우리 구 『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』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82조 및 ‘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’ 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, 2016.11.10.) 제8조에 따른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(부위원장) 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1. 열람기간: 2025. 12. 16.(화) ~ 2025. 12. 24.(수) 10:00 ~ 17:00 까지

※ 기간 중 토·일요일 열람 불가

2. 열람장소

-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사무실
(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극동아파트상가 201호)

3. 열람내용 : “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”에
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

4. 안내사항

가. 선거원에 대한 사항

-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,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나.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- 1) 선거인명부 열람기간내 명의변경, 기재사항의 누락·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구청이나 공공지원 사무실에 제출(방문 또는 우편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
- 2) 제출서류 :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(제17호 서식)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

다.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

- 1)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2)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에 관계없이 선거권은 1개입니다. 다만, 부동산 중 일부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(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)이고 각각 대표소유자 선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수의 선거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) 제출서류

가)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(제1호 서식)

나)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
※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라.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

- 1)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가)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

※ 미성년자는 직접 선거권 행사 불가

나)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
다)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

2) 제출서류

- 가) 위임장·대리인 지정서 (제18호 서식)
- 나)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
- 다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 (※해당자에 한함)
- 라)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해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※해당자에 한함)
- 마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(※해당자에 한함)

마.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에 관한 사항

-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(매매, 상속 등)이 발생한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자료(등기부등본)를 제출하여야 하며, 확정 공고 이후에는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
바. 열람에 관한 사항

-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(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)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여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,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.

※ 제출서류 중 서식은 공공지원 사무실(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, 광장극동아파트상가 201호),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(<https://cleanup.seoul.go.kr/kukdong-reborn>), 광진구청 홈페이지 (<https://www.gwangjin.go.kr/>) ‘광진소개 > 광진소식 > 고시공고/입법예고’ 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

5. 문의

-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사무실(☎02-454-7867)
-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주거사업2팀(☎02-450-9723)

붙임 제출서식 각 1부. 끝.

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

1. 소유권 현황

권리 내역	토 지	소 재 지 (공유여부)	면적(㎡)
		(계 필지)	
		()	
		()	
		()	
권리 내역	건축물	소 재 지 (허가유무)	동 수
		()	
		()	
		()	

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_____을(를)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
“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”과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
행하는데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 대표자 (선임수락자)

성 명: (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)
생 년 월 일:
전 화 번 호:

○ 위임자 (위임동의자)

① 성 명: (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)
생 년 월 일:
전 화 번 호:

② 성 명: (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)
생 년 월 일:
전 화 번 호:

③ 성 명: (자필서명 또는 지장날인)
생 년 월 일:
전 화 번 호:

■ 첨부 : 대표자 및 위임자 전원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 각 1부

광진구청장 귀하

선거인명부 이의 신청서

1. 신 청 인

○ 성 명:

○ 생년월일:

○ 주 소:

(연락처 :)

2. 이의신청 내용 :

3. 증빙서류 :

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열람한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지장)

첨부: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

광진구청장 귀하

위임장 ■ 대리인 지정서

신청인 (위임하는 자)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
	전화번호	(휴대전화)		
대리인 (위임받는 자)	성 명		주민등록번호	-
	주 소			
	위임자와 관계			
	전화번호	(휴대전화)		

본인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주민협의회 부위원장 선출에 관련한 선거의 선거권자로서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함에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감도장 날인)

*구비 서류

1)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과의 가족관계(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)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

※ 신청인이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신청인 지장(또는 사인)과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

2)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.

광진구청장 귀하